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제14차 회의보고서

조 미 영/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I. 서 언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 CCGP)는 CODEX 일반과제분과위원회 (General Subject CODEX Committee)중의 하나로서 1965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은 프랑스이다.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절차를 논의하고 전분과위원회 관련된 작업을 조정하며 총회에서 회부한 사항을 토의하는 분과로서 규정집에 기재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CODEX 규격집의 목적 및 범위, CODEX 규격의 성격, 각국이 CODEX 규격을 수락 일반 원칙 설정
- CODEX 분과위원회에 적용할 지침서 개발
- 개별 규격이나 부수 규정을 그 국가의 경제 주체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출한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설명서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 규범(Code of Ethic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n Food)”의 설정

본고에서는 금번 14차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합의사항 및 합의의 의미를 정리하여 현재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의 논의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회의 개요

금번 14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47개국에서 178명의 대표와 6개 정부간 국제기구 및 26개 비정부 국제기구에서 57명의 대표등 총 236명이 참석하였고 재정경제부 국제회의실에서 Prof. Pierre Louisot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WTO/SPS 및 WTO/TBT 협정 발효에 따른 CODEX 기준·규격의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논의와 CODEX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CODEX 내의 합의도출방안, 수락규정, TBT 협정 내에서의 CODEX 규격의 지위를 논의하는 등 당분과위원회는 WTO/SPS 및 TBT 협정과 연계하여 중요도가 높은 토의가 전개되었다. 금번 14차 회의의제는 표 1과 같다.

표 1. 14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회의의제

의제번호	회 의 의 제 명	문서 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CX/GP 99/1
의제 2	총회와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 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 등	CX/GP 99/2
의제 3	위해분석 1) 정의 - 정부의견 2) 위해분석 작업원칙	CL 1998/33-GP CX/GP 99/3 CX/GP 99/4
의제 4	합의도출방안	CX/GP 99/5
의제 5	CODEX 일반원칙 검토 : 수락절차개정	CX/GP 99/6
의제 6	CODEX 기준지위검토 1) TBT 협정내에서 CODEX 기준의 지위 2) CODEX 권고기준의 적용에 관한 제안서	CL 1998/33-GP CX/GP 99/7 CX/GP 99/8
의제 7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요소범위 원칙검토 1) 위해분석 관련 과학의 역할과 기타 요소 2) BST 사례 적용	CX/GP 99/9 CX/GP 99/10
의제 8	규정집 개정 1)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안) -정부의견 2) CODEX 접촉창구의 핵심기능 -정부의견	CL 1998/31-GP CX/GP 99/11 CL 1998/34-GP CX/GP 99/12
의제 9	CODEX 위원회 규정중 VII 적용 (집행이사회에 회원국의 참석)	CX/GP 99/13
의제 10	기타 사업과 향후 작업 및 차기회의 날짜와 장소	
의제 11	보고서 채택	

I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

1.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의제 2)

가. CODEX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 분과위원회

CCMAS에서 상정된 'CODEX 분석방법의 설정 및 선정 원칙'에 대하여 사무국의 설명이후 노르웨이, 태국 및 스페인은 CCMAS에서의 작업 결과를 보고 규정집에 삽입할 내용을 결정짓자고 하는 등 여러 논의가운데 CCMAS의 작업이 끝난 후 규정

집에는 CODEX 내부 운영을 위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회원국의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설정에 관한 내용은 규격집에 실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규정집은 CODEX 분과위원회의 내부 운영지침으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게 되어 규정집의 성격이 보다 확실하게 되었다.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설정 원칙이 규격집에 삽입되는 경우 이는 WTO/SPS 협정의 참고 문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하며, 아국의 시료채취 방법과 검사방법도 CODEX 원칙과 조화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건

“미생물 위험평가 수행원칙 및 지침(안)”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제안한 인도의 의견에 회원국의 여러 국가의 지지 빌언으로 차기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에서 ‘국제간 식품교역시 윤리규범 (Code of Ethics for International Trade in Foods)’을 수정할 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상기한 수정논의의 결과에 따라 SPS 협정 적용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CODEX 규격의 적용원칙 또는 방법면에서 개도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식품안전목표의 건

CODEX 사무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식품안전목표(Food Safety Objective: FSO)를 집행이사회에서 CCFICS에서 동등성 개념과 연계하여 우선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식품안전목표의 기술사안과 더불어 CCGP와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CCFH)에서 동시에 작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C,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등은 동등성(equivalence)과 연계하여 CCFICS에서 논의하여 함을 발표하였으며, 호주 등은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CCGP)에서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P)과 같은 사회적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는데 결국 차기 회의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식품안전목표는 식품의 위생관리조치를 선택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CCFICS에서는 이를 국가 간의 식품위생관리조치의 동등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CCFH에서는 위해관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CCGP에서는 ALP와 같은 사회학적인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WTO/SPS 협정문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해분석 정의(의제 3.1)

우리나라는 위해관리의 정의 중 CODEX는 이행(implementation)을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의 찬성 빌언에 따라 반영되었다. 위해정보전달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분야와 협의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 업계 및 기타 이해당사자를 확대하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규정집의 위해관리(risk management)와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의 정의에는 아국을 비롯한 미국, EC, 호주 및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 International)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 위해관리 :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장하기 위해 위해평가와 해당 요소를 검토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위해평가와 구별된 적정정책안의 설정과정, 필요시 적정예방관리안(appropriate prevention and control options)을 선정하는 과정도 포함
- 위해정보전달 :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업체, 학계 및 기타 이해당사자간에 위험과 위해, 위해관련요소 및 위해인식(risk perception)에 관하여 또한 위해평가 결과해석 및 위해관리 결정근거 등에 관하여 위해분석과정시 상호정보·의견교환

3. 위험분석 작업원칙 (의제 3.2)

아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EC, CI 등에서 회의내부문서(CRD)로 의견을 제출할 만큼 각국의 관심이 많은 분야로서 일차 논의 결과 제안된 안을 기초로 다시 논의하는 등 회의 이튿날 내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오고갔던 의제이다. 우리측은 위험분석(risk analysis)에 대하여 위험분석 절차는 국가(national government)와 조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조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는데 프랑스, 인도, 멕시코에서 지지하였고 CODEX 사무국은 CODEX 규정집 정관 제1조(b)항에 따라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정부국제기구(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와의 조화문제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나뉘어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기술하여야 한다는 필리핀 등의 주장과 WHO 대표의 위험분석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었다. 위험평가정책(risk assessment policy) 부분에 대하여서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험관리자가 위험평가자에게 부여하는 의무 등이 확실하여야 한다는 EC와 CI 등의 주장도 있었다. 위험관리에 참정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독일 등의 EC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과학적 근거만 가지고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상치되어 논쟁이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호주는 CODEX의 위험정보전달에 대중과의 논의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문은 CODEX 내에서 실시하는 위험분석 작업 원칙으로 제한할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평가정책, 위험정보전달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3단계로 회부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4. 합의도출방안 (의제 4)

FAO legal council은 본 안건에 대한 배경과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일본, 독일 등은 이에 대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consensus)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CODEX의 규격 설정이 WTO/SPS 협정 발효이후 긴급히 필요하나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국을 비롯한 필리핀 등의 국가는 분과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작업반 구성, 전자매체를 이용한 협의 등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수정(안)과 같이 총회참석 회원국의 2/3 찬성 합의에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하였다.

결국 Rule VI.2의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고, Rule X 2항을 '총회는 규격을 채택하거나 개정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투표로 규격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작성하였다.

5. CODEX 일반원칙 검토-수락절차개정(안)(의제 5)

CODEX 사무국은 본 건은 '95년 제21차 총회에서부터 WTO/SPS 및 TBT 협정과 연계하여 수정하기 시작한 것이며, 제22차 총회에서는 간결하게 할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브라질, EC, 말레이시아, 영국 등은 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네덜란드 등은 수정안에 찬성하였으며,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등은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존의 내용보다 업무가

많이 증가하며, WTO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려 총회에 개정 건의를 할 수 없었음을 알리기로 합의하였다.

6. TBT 협정상 CODEX 기준의 지위(의제 6.1)

본 의제는 CODEX 기준중 소위 권고기준 (규격 중 별첨과 임의규정)의 WTO/TBT 협정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FAO/WHO 법률자문관과 TBT 위원회 사무국에 의뢰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CODEX 사무국은 SPS 위원회에서 CODEX 지위에 관한 결정내용과 45차 집행이사회 결과를 소개하고 TBT 협정하에서의 규격과 기술규정에 대한 의미를 발표하였으며 상업상 규정인 규격 중 별첨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국 대표는 CODEX 규격중 권고성격의 별첨내용은 국제무역상 기술지침으로 이용되므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CODEX 분과위원회가 본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검토하기가 어렵고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CODEX 규격과 권고기준은 WTO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별첨을 특징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캐나다는 별첨 중 정부규제가 아닌 사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WTO 대표단은 현재까지 이 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회의시 여러 논의 끝에 규정집을 제외한 모든 CODEX 기준(texts) 즉 규격(standard)과 별첨(annex) 등은 모두 TBT 협정의 정의상 “규격(standard)”에 해당되며, CODEX 기준에 대한 수락절차상의 분류는 WTO 협정 적용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CODEX 규격중 별첨의 삭제여부는 상반된 의견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CODEX 기준·규격중 별첨에 있는 내용은 위생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상 그 기준을 제품의 규격으로 참고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결정은 CODEX 규격의 별첨을 포함하는 모든 문구가 WTO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인 점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위생규격이외의 품질기준인 권고기준도 WTO 협정의 적용에서 정부가 고려하여야 할 사안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CODEX 기준·규격의 WTO/SPS 협정과 WTO/TBT 협정의 국제기준규격의 입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아국은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식품공전과의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식품안전기준규격에 CODEX 규격 중 별첨내용에 대한 적용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CODEX 권고기준의 적용에 관한 토의문서 (의제 6.2)

호주대표는 호주 자국내 식품법령구조 내에서 권고기준의 이용현황을 소개하였다. 즉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실행규범과 분명한 목적아래 개별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및 보조문서의 이용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추가논의는 없었다.

8.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요소 원칙범위 검토 (의제 7.1)

당의제는 CODEX 의사결정기준 2항에 관한 합법적인 요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회의기간동안 국가별로 뚜렷한 양분화 현상을 보였으며 모두 타당성 있는 발언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었던 의제였다.

미국대표단은 의사결정시 위해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근거는 필수적이며 기타요소의 도입은 CODEX

가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특히 건강 보호(health protection)가 일차 목표인 기준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해가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언급하였다. 환경적인 요소는 CODEX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잠정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나 불확정성(uncertainty)의 경우, 기타 요소로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와 참관인으로 참석한 ICGMA, COMISA, GCPF, CRN에서 동의하였다.

호주대표단은 기타 합법적인 요소검토는 CODEX 규격상 필수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실행규범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미국과 동일하게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면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동물건강은 CODEX 논의사항이 아니며 합법적인 요소사항에 식품안전성, 과학적 근거, 품질이 기타요소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U를 대표한 독일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표단은 기타 합법적인 요소검토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이 기준은 위해분석의 작업원칙에 포함되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기타 요소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타 합법적인 요소에는 동물복지, 생물공학, 성장프로모터(growth promoter)의 이용과 같은 생산과정이 포함되고 동물건강과 복지사항도 국가에서 수의약품의 등록(registration)과 관리(administration) 시 이미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인체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과 소비자 우려사항과 사회적인 요소도 교역관행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CI, ICA, IACFO에서 동의하였다.

각 국가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논의 끝에 당 분과 위원회는 관련 분과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위해분석시 고려하는 모든 합법적인 요소(legitimate factors)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9.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할 기타요소범위 원칙 검토- BST 사례 적용(의제 7.2)

CODEX 사무국은 22차 총회시 호명투표(roll-call vote)로 BST MRL을 채택하였으나 단, JECFA 와 CCRVDF(잔류수의약품분과위원회)의 자료를 재평가하고 당분과위원회에서 “기타 합법적인 요소 (other legitimate factors)”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한 사실과 제13차 당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기타 합법적인 요소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과 BST 사례중심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였다.

독일대표는 EU를 대표하여 합법적인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BST 채택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기타 합법적인 요소에 대한 토의가 완성된 이후에 추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미국 대표는 CODEX는 공정한 결정을 이루어야 하며 기타 합법적인 요소는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이 문제로 인하여 CODEX 규격 채택 및 설정이 느려질 우려가 있고 CODEX는 적정건강요소만을 고려해야 하며 과학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식품안전문제는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며 MRL 설정의 경우 기타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국가의 위생 관리규정이며 소비자의 우려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이 사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을 피력하였다. 뉴질랜드 대표는 기타 합법적인 요소의 검토는 국가수준에서 합법적으로 다룰 사항으로 CODEX 제도를 무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총회에서 당분과위원회로 의뢰한 합법적인 요소 건은 대표단의 의견이 양분화되어 합의를 이룰 수 없었음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앞으로 CODEX내에서 의사결정 시 기타 합법적인 요소를 적용함으로서 CODEX 규격의

채택과 설정이 지연되거나 설정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0. CODEX 규정집 개정안

가.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원칙(안)

CODEX 작업에 비정부기구의 참여 사안은 비정부기구의 적극적인 회의내부문서제출과 의견개진이 있었고 회원국에서 지지하는 가운데 합의를 보았다. 국제소비자기구와 미국과 영국은 비정부기구의 참여 수를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제안하였는데 CODEX 사무국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기구의 합법적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였다. 당분과위원회는 참관인 지위를 희망하는 비정부기구는 별첨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참관인 기구표에는 1) 무역업체그룹 (trade and industry groups) (CIA 등), 2) 소비자 및 민간기구 (CI, CSPI 등) 3) 전문가그룹 (IFT, scientific organizations 등) 인지를 표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이사회에 참석승인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별첨정보에는 비정부기구의 재원(sources of funding) 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당분과위원회는 원안에 있던 비정부기구의 CODEX 작업에 참여수를 제한하자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채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원칙(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ODEX 접촉창구의 핵심기능

당의제는 유럽 및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어 회부된 사안으로서 CODEX 접촉창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사항이다. 당분과위원회는 상정된 본 안을 단순화시키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국가마다 기반구조와 행정구조, 자원과 절차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구조나 CODEX 참여절차를 특정화시키지 않

기로 하였으며 서두에 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국가 CODEX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구조나 자원과 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및 유럽지역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 본 안은 회의내부문서(CRD)를 제출한 호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후 23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11. CODEX 위원회 규정중 규정 VII 적용 - 하부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원국의 참석(의제 9)

당분과위원회는 유럽지역조정위원회에서 규정 III (집행이사회의 조직)과 규정 VII (CODEX 회원국으로서 CODEX 하부조직에 참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의 참여범위를 확인하자는 요청에 따라 논의하게 되었음을 소개하였다. FAO 법률자문관은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하부조직으로서 CODEX 위원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집행이사회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으나 관행상 집행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회원은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원으로부터 참석희망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항은 FAO 기구의 관행임을 밝혔다. 또한 지역대표이외에 두명의 자문관이 동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대표 국가외의 타국의 자문관이 집행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CODEX 위원회 회원국을 집행이사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토의한 결과 현재 운영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집행이사회는 CODEX 정책 의사결정기구의 하나로서 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하부조직이다. 따라서 집행이사회 의 참관인 참여문제는 CODEX 사무국에서도 조심스럽게 고려되는 사안으로서 금번 회의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지역대표이외의 자문관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동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아국에서도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2. 기타 사업과 향후 작업 및 차기 회의날짜와 장소(의제 10)

차기 회의시 합의도출방안, 식품안전목표검토, 위

해분석작업원칙, CODEX 의사결정 과정시 과학이 외의 합법적인 요소검토, 개발도상국의 특별차등대우를 고려하여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2000. 4. 10~1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금번 14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작업결과 요약은 표 2와 같음.

표 2. 14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작업요약표

의 제 명	향후 조치	참고 문항 ALINORM 99/33A
규정X 개정	정부 23차 CAC	46항 부속서Ⅱ
위해분석정의	정부 23차 CAC	15항 부속서Ⅲ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안)	정부 23차 CAC	90항 부속서Ⅳ
CODEX 접촉창구의 핵심기능	정부 23차 CAC	95항 부속서Ⅴ
위해분석 작업원칙	정부 15차 CCGP	37항
식품안전목표	CCFICS 15차 CCGP	9항
합의도출방안	사무국 15차 CCGP	51항
수락절차	23차 CAC	57항
BST 관련 과학과 기타요소의 역할	23차 CAC	85항
위해분석관련 과학과 기타요소의 역할	사무국 15차 CCGP	74항
윤리규범개정(개도국의 특별대우포함)	CAC 15차 CCGP	6항

VII. 결 언

금번 14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WTO/SPS 및 WTO/TBT 협정 발효에 따른 CODEX 기준·규격의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CODEX 기준·규격의 설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원칙(위해분석 작업원칙, 합법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현 상황에 유기적이며 융통성 있는 운영과 대응을 위해 CODEX 내의 합의도출방안, 수락규정, TBT 협정 내에서의 CODEX 규격의 지위를 논의하는 등 당 분과위원회는 WTO/SPS 및 TBT 협정과 연계하여 중요도가 높은 토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제21차 총회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BST 사항에 대해 금번 회의에서도 EU와 미국 간에 기타 합법적인 요소 문제를 놓고 각국간의 치열한 이해표명으로 인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향후 국가간에 분쟁 요소에 대해 CODEX 의사결정기준을 토대로 상이한 입장표명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CODEX 기준·규격설정이 어려워지고 지연될 우려가 되고 있다.

금번에 논의되었던 위해분석 작업원칙의 경우 WTO/SPS 협정에서 요구하는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설정시 위해평가에 근거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CODEX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어 CODEX 사무국과 향후 당분과의 논의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차기에 논의될 위해분석 작업원칙, 합법적인 요소는 WTO 협정의 분쟁해결기준이 되는 CODEX 기준의 의사결정기준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의제로서 판단되며 상기한 개념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가 총회, 집행이사회에 이어 중요도가 높은 분과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과회의에 지속적이며 일관된 전문가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아국의 입장대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WTO 협정 발효와 함께 그 중요도가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WTO 출범이후 자국에 관련 기관간에 CODEX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자국의 보호논리를 개발하여 CODEX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식품위생관리제도는 범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뿐만 아니라 지역 협의체인 APEC, NAFTA 등 지역그룹에서도 무역자유화흐름과 아울러 지역적용기준으로서 도입되고 있어서 국제규격기준설정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